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44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강득구·김준혁·민병덕

김상욱 • 복기왕 • 윤종군

김주영 • 박홍배 • 이강일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 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폐지 수거율을 높이고 재생용지의 수요도 높일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함.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음.

이에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

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됨.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한정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6항 신설, 제60조의4제4항 신설 및 제111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비후보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제작할 때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 코팅이 양면으로 된 종이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할 때에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65조제13항 전단 중 "제64조제2항"을 "제60조의3제6항과 제6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벽보""를 ""명함"과 "선거벽보""로, "'첩부하지"를 ""제작"은 "작성"으로, "첩부하지"로 한다.

제66조제8항 전단 중 "제64조제3항"을 "제60조의3제6항과 제6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벽보""를 ""명함", "선거벽보""

로, "'작성하여"를 "'제작"과 "작성하여"로, "제출할"을 "제출"로, "작성할"로"를 "작성"으로"로 한다.

제1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인쇄물을 통하여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의 정책공약집 발간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 ⑤ (생 략)	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예비후보자가 제1항제2호의
	<u>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u>
	명함을 제작할 때에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
	2호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
	는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 코팅
	이 양면으로 된 종이 등 재활
	용이 어려운 재질의 종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u>다.</u>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할 때
	에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용한
	<u>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⑫ (생	제65조(선거공보) ① ~ ⑫ (현행
략)	과 같음)

①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 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 별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 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 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 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 는"으로, "경력·학력·학위·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 개자료"로 본다.

⑭ (생 략)

-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 략)
 - ⑧ 제64조제3항 · 제8항 및 제6 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 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 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

③ 제60조의3제6항과 제64조제
<u> 2항</u>
2.52 m 2. # 2.2
<u>"명함"과 "선거</u>
벽보"
"제작"은 "작성"으로, "첩부하
ス]
<u>√1</u>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8 제60조의3제6항과 제64조제
<u> 3항</u>
"머ᅱ" "긔퀴버ㅂ"
<u>"명함", "선거벽보"</u>
<u>"제작"과 "작성하</u>
<u>여제출작성"으</u>
<u>로</u>

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 ~ ④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 한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이 제1항에 따라 인쇄물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 용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 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당의 정책공약집 발간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6항을 준 용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